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22호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마. 학교급식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해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4
----------	-----

발의연월일 : 2023. 10. 13.

발 의 의 원 : 박해정 · 김경희 · 김남수 · 김묘정 · 백승규
심영석 · 이원주 · 전홍표 · 진형익 · 한상석
한은정 의원(11명)

찬 성 의 원 : 김우진 · 김헌일 · 황점복 의원(3명)

1. 제안이유

창원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학교급식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등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삼중수소·스트론튬·아이오딘·세슘 등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 “학교급식시설”이란 창원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표본검사를 실시하되 정기검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또는 관계기관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즉시 관련 학교급식시설 및 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교육) 시장은 학교급식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생략)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 25. (생략)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핵원료물질
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